

당첨자 자격서류 접수 안내

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오산 세교2지구(A-14BL) 우미'린 사전당첨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살기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성실 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등으로 인하여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사전당첨자에 한해 현장접수처 방문일정을 홈페이지 예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방문일정을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라며, 미예약 또는 예약일자 외 방문 시 현장접수처 출입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
선택이 불가한 시간대는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선택 가능 시간대로 신청하셔야 하며 당사 콜센터 전화요청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을 하셔도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| 오산 세교2지구(A-14BL) 우미'린 사전당첨자 주요 일정 |

구 분	서류접수	계약체결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월 3일(월) ~ 1월 12일(수) 10일간, 09:30~17:00	2022년 1월 18일(화) ~ 1월 23일(일) 6일간, 09:30~17:00
대 상	특별공급 / 일반공급 사전당첨자	특별공급 /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중 서류검수(적격) 완료자
홈페이지 예약접수 기간	2021년 12월 24일(금) 10시 ~ 12월 28일(화) 17시까지	2022년 1월 12일(수) 10시 ~ 1월 17일(월) 17시까지
장 소	우미'린 현장접수처(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-3) / ☎ 031) 957-1600	

- 방문인원 : 사전당첨자 본인(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)만 입장 가능 ※ 동반자 입장불가
- 방문지참물 : 당사 홈페이지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참조(각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 지참 및 대리접수 시 위임용 서류 일체)
-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일자별 예약고객에 한해서만 입장가능하며, 예약시간에 늦을 경우 접수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
- ※ 상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하여 서류검수결과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사전공급계약 체결이 가능

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1.11.30(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서약서 (무주택, 사전당첨자)	본인	-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 필수, 대리발급분 접수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(단, 대리인 계약불가)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	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		직계비속	-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	직계존속	-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,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(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 확인)
	○			배우자	-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)
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본인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산정한 경우
	○			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출입국 사실증명원	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
	○			직계존속	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~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(2021.11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	직계비속	-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 (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복무확인서	본인		-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
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1.11.30(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<p>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p>
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○	주민등록표등본	본인 및 직계존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출입국 사실증명원	배우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인감도장	청약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위임장	청약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신분증	대리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